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0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0호)	1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10호)	3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5
2.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 확대 및 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남인순의원안)	10
3.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규정 신설(남인순의원안)	14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24.
- (3) 회 부 일 : 2024.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39인

(2) 제 안 일 : 2024. 7. 2.

(3) 회 부 일 : 2024. 7. 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항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김선민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 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u>설립·운영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 ----- ----- ----- ----- ----- ----- ----- ----- ----- ----- -- <u>설립·운영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 ----- ----- ----- ----- ----- ----- ----- ----- ----- ----- -- <u>설립·운영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의 네 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4년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¹⁾ 중 설치 후 폐지한 서울특별시와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원 개요 >

성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	
주요 사업내용	①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자에게 긴급돌봄 제공 ②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③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④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관련 국비 예산	(설립) 5억원 (인건비) 20명에 대한 인건비의 50% 지원(약 4억원) (운영비) 설립 후 3년까지는 10억 8,000만원 중 50% 지원, 이후 30% 지원	
설치 현황 (‘24.7. 기준) *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에 설치	단독 기관 (11)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제주
	타 기관과 통합 (4)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미설치 (1)	경북
	설치 후 폐지(1)	서울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전북,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제주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설치 이후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2023년도('22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

□ 경영성과

○ 주요사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계획 대비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함
-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하여 적시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만족도를 달성함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계획·실행되고 있으며 목표 성과를 달성함
- 지역 이용자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성과

- 전체 시·도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는 90.9점으로 전년 대비 1.8%p가 향상됨
- 고난도 사례나 민간곤란 사례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 평가등급

- (경영평가) S등급 1개소, A등급 6개소, B등급 4개소, C등급 3개소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역	경남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대구, 경기, 세종, 전북	서울, 울산, 제주

* 종합평가결과 D등급 없음

- (업무성과평가) S등급 1개소, A등급 3개소, B등급 1개소, C등급 2개소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역	경남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제주, 서울

* ① 22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② 원장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③ 업무성과평가 시점에 원장 공석인 경우를 제외한 7개 사회서비스원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등 산하 4개 기관을 통폐합한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고,

울산광역시 역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가 의결되어 폐원되었고, 경상북도에는 2024년 7월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음.²⁾

□ 이에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차등 없는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³⁾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이 필수 기관으로서 기능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 중심 제공,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성 및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2) 경상북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기존 기관(경북행복재단)과의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경북도 ‘기능 중복’ 사회서비스원 설립 고심, 매일신문(2020.10.18.))

3) 참고로, 시·도별 기관 설치 의무화 관련 입법례로 「영유아보육법」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시·도 사서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의무화 부적절
- (서울특별시: 신중검토) 지방출연기관 설립은 자치사무로서 지자체 권한이며 설립 의무화 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남
- (울산광역시: 신중검토)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의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며, 지역 특색 및 여건에 맞는 독자적 기관 운영에 자율성 저해할 수 있음
- (경상북도: 신중검토)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사회복지수행기관에서 추진 가능하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유무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미미
 - *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의 설립·운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 검토를 통한 재량 시행 필요, 의무화하는 경우 국비지원 필요

2.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 확대 및 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범위를 현행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기관’에서 단순 ‘신규로 설립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안 제11조제2항 제1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생략)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1. <u>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u>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 <u>신규로</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	제29조(보조금 등) ----- -----

비스원의 <u>설립·운영</u> 에 필요한 경비 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u>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u> ----- ----- -----.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부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현황 >

(단위: 개)

구분	총계	국공립시설	정부위탁사업	종합재가센터
전체	266	132	109	25
부산	5	1	4	0
대구	26	8	16	2
인천	16	8	5	3
광주	19	9	7	3
대전	27	17	9	1
울산	9	5	4	0
세종	23	12	9	2
경기	31	17	12	2
강원	22	16	4	2
충북	2	0	2	0
충남	20	10	8	2
전북	16	9	5	2
전남	15	3	10	2
경남	18	8	8	2
제주	17	9	6	2

자료: 보건복지부 (2024.6.기준)

□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운영 기관 확대는 사회서비스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회서비스원에 신규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할 경우 제1항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한 것의 취지가 상당부분 소멸하고, 경우에 따라 법률에서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 법률을 제정할 당시,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사회서비스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선 위탁 대상 범위가 축소된 연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규정 수정 연혁 >

회의명	소위 논의 내용	법안 반영
21.2.2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	이 법 제정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는 경우, 민간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이 위축되지 않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i)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ii) 공공의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을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제한하자는 의견, (iii) 우선위탁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iv)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자 선정업무 수행)와 정책심의위원회(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수탁 적정성 판단) 2단계 심의구조를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개진됨.	남인순 의원안의 당연 우선위탁 조항 삭제, 우선위탁의 범위 축소 (신규, 위불법, 평가저조, 취약지소재 시설 → 신규, 위불법, 취약지소재 시설)

회의명	소위 논의 내용	법안 반영
21.4.28.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우선위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규 설립한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합의 (수정의견)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또한 개정안은 현행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그 사업 수행 경비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시·도 사서원이 모든 신규기관을 우선 위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선 위탁 시 민간과 경쟁 심화 및 민간 위축 우려

* 사회서비스원 인력, 예산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및 공급 부족 분야에 역량 집중하는 것이 공공성 제고에 부합

- (광주광역시: 신중 검토)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과정 중 민간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필요

3.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규정 신설(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2장의2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u> <u>제30조의2(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이하 “시·군·구 서비스원”이라 한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 <u>② 시·군·구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u>④ 시·군·구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u>

<신 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⑤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업무 범위,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시·군·구 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0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27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서비스원”은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군·구”로 본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비스원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원-----

-----.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에 대

-----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원-----

-----.

제42조(지도·감독 등) ①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서비스원의 업무를-----
-----.

② -----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에-----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의-----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하여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u>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u> ----- ----- ----- -----.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시·도 서비스원</u>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비스원</u>----- ----- ----- -----.
② <u>시·도 서비스원</u>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u>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비스원</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시·도 서비스원</u>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원</u> ----- ----- ----- -----.

나. 검토의견

- 2024년 7월 기준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있고, 그 중 대구·울산·충남·광주 4개 시·도는 사회서비스원과 다른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중임.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지역	기관명
서울	-
경기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인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원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충북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남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대전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종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전북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라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광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경북	-
경남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대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산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울산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제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더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회서비스 관련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그 취지로 보임.

□ 다만,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당시 1개소당 약 5억원의 설립 보조금과 20명에 대한 인건비 약 4억원, 설립 이후 3차년도까지 운영비 10억 8,000만원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다는 점에 비추어,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추계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시·도 단위로 설치된 사서원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타 기관과 통합 운영하는 상황* 고려 시, 시·군·구 사서원은 재정 비효율 초래 우려

* 대구, 울산, 충남, 광주 4개 시·도는 사서원과 다른 공공기관 통합 운영

- (경상북도 구미시: 신중 검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지역 여건에 따라 격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급 등 중앙과 시·군·구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여 지자체 업무부담 증가 우려

*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 (시·군·구협의회: 신중 검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단위 돌봄체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분권 취지에 적합

문 의 처

02)6788-5497